

의안번호	2202695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4. 9. 25.
추 계 번호	24B26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u>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를 포함한다</u>)에 고정시켜 <u>교통을 방해하거나</u>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밑줄 내용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u>지체 없이</u>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함(제2항) ※ 자동차 강제 처리 시점으로 “지체 없이”를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교통 방해 등 운행 외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견인 및 폐차 요청 등 강제 처리 사유 구체화 및 지체 없는 강제 처리 집행 명문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는 것임
- 현행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강제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비용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다만, 견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
 - 2023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비용과 관련하여, 총 견인 건수 12,565건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견인비용을 징수한 건수는 7,564건(60.2%)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견인한 건수는 2,742건(22.9%), 기타 폐차장 견인비용 상계처리나 지자체 자체 보유 견인차로 견인 등 미집계 건수가 2,259건(17.9%)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견인을 위해 1억 6,57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1] 2023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비용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견인 건수 (A+B+C)	견인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한 건수(A)	견인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견인한 건수(B)	자체예산 견인 집행 예산 (B의 집행예산)
서울특별시	315	315	0	0
경기도	4,308	2,721	1,587	86,283
경상남도	1,292	1,253	39	2,180
경상북도	902	571	320	18,291
광주광역시	11	11	0	0
대구광역시	589	103	1	130
대전광역시	302	283	19	1,544
부산광역시	1,807	1,709	98	20,120
세종특별자치시	44	44	0	0
울산광역시	199	0	29	870
인천광역시	987	0	0	0
전라남도	269	58	101	5,410
전북특별자치도	596	103	421	11,990
제주특별자치도	138	0	138	5,340
충청남도	88	38	50	2,583
충청북도	340	339	1	165
강원특별자치도	378	16	76	10,810
합계	12,565	7,564	2,880	165,716

주: C(폐차장 견인비용 상계처리, 지자체 자체 보유 견인차로 견인 등 기타 미집계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 개정안에 따라 견인 등 자동차 강제 처리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경우 강제 처리의 집행 건수가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견인 등의 처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견인 등 강제 처리 건수의 증가 건수 및 해당 증가 건수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